

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소속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2월 24일, 박순범 의원 외 15인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2월 2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
(2023년 3월 10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박순범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이상기후, 병해충 등으로 인한 꿀벌 개체수 감소 및 벌꿀생산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‘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’ 수립 등을 규정함

다. 주요내용

- 도지사로 하여금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함(안 제3조의2)
- 양봉산업 지원 사업 중 꿀벌의 병해충을 질병 및 해충으로 명확히 규정함(안 제6조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진영)

가. 본 조례의 개정은

-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‘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’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

나. 주요 내용은

- 제3조의2를 신설하여 ‘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’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

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의2

제3조2(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.

1.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
 2.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
 3.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
 4.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
 5. 꿀벌의 질병 및 해충에 관한 사항
 6.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⇒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

- 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”를 “다음 각 호의 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꿀벌의 병해충”을 “꿀벌의 질병 및 해충”으로 개정함

⇒ 꿀벌의 질병 및 해충 방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포함하고, 농가와 양봉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목적으로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미흡했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음
- 도내 양봉농가는 지난해 응애의 확산으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어 경영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,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경영안정과 양봉산업 지원이 시급함에 따라 조례개정의 시의성이 인정됨
- 국내 천연 꿀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으며, 꿀 수입량은 2020년 기준 천 톤을 넘어서며 급증하고 있어, 조례 개정을 통한 관련 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의 필요성이 인정됨
- 조례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문제가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